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e만큼든든한어린이보험

나. 보험의 종류: 순수보장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27세만기	5년납, 10년납, 24세납, 전기납	0세 ~ 14세	월납
	15년납	0세 ~ 12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4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약관 제4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기타

가. 이 보험의 경우 1구좌당 보험가입금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나. 만기고객 종신보험 가입 특전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중 해당 시기에 회사가 지정하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 산출된 주계약의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다. 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통원”을 보장함에 있어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한다.

라. 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보장함에 있어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 약물치료”는 약관 제1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에서 정한 “암수술급여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한다.

마.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판매한다.
- (2) ‘(1)’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0%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바.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아.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